

제26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
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토보고서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25. 10. 20.

사회건설위원회
전문위원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

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토보고서

1. 경과

의안 제625호로 2025년 10월 2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10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합회는 실질적인 조직으로 그 역할과 활동내용을 명시하여 현행화하고 그에 따른 현행기구의 회의를 명시함으로서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문구정비(안 제1조, 안 제3조, 안 제8조제5항, 안 제14조제1항)
- 나. 연합회 명시, 역할과 활동 신설 (안 제2조제5호, 제8조의2)
- 다. 해당 법률 명시 (안 제13조제2항제1호)
- 라. 회의 명시 (안 제14조제2항제4호, 제5호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- 다. 협의사항
 - 1) 행정규제심사: 신설·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
 - 2) 부패영향평가: 개선 의견 반영
 - 3) 성별영향분석평가: 개선 사항 없음
 - 4) 인권영향평가: 검토 및 시정 요청
- 라. 입법예고(2025. 8. 28. ~ 9. 17./20일간) 결과: 해당 없음

5. 검토의견

개정 배경 및 취지

- 본 조례는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1조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(이하 “대표협의체”라 한다), 실무협의체, 실무분과 및 동 지역사회보장 협의체(이하 “동 협의체”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(2025. 7. 25.)되었음.
- 한편, 영등포구는 동 협의체의 위촉직 위원장으로 구성된 “1)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합회(이하 “연합회”라 한다)”도 별도로 구성·운영하고 있으나, 연합회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실정임.
 - 집행부서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, 서울시 자치구 중 영등포구를 포함한 2)19개구에서 연합회를 구성·운영하고 있음.
 - 이에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실질적으로 구성·운영되고 있는 연합회의 기능 및 구성을 명확히 규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- 1)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, 구-동 협의체 간 정보공유 및 사업 협력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구성된 조직
- 2) 구로, 종로, 성동, 광진, 동대문, 성북, 도봉, 노원, 은평, 서대문, 마포, 양천, 강서, 금천, 동작, 서초, 송파, 강동, 영등포

구 분	정 의	주요 기능 및 특징
대표협의체	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,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·법인·단체·시설과 연계·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의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·시행·변경·평가, 사회보장 급여 및 사업 전반 심의·건의 - 지역사회보장 정책의 최상위 심의·건의 기구
실무협의체	대표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표협의체 안건 사전 협의·조정, 서비스 연계·협력, 모니터링 등 실무검토 - 대표협의체 실무지원, 분야별 8개 분과(실무분과) 운영
3) 실무분과	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분야별 조사·연구 및 연계·협력 업무수행 - 실무협의체의 세부 분야별 실무조직
동 협의체	동 단위의 사회보장 관련 사각지대 발굴, 자원연계·협력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위기가정·취약계층 발굴, 복지자원 연계, 지역보호체계 구축 - 동 단위 복지서비스 연계·협력 중심 조직
연합회	동 협의체 간, 구-동 협의체 간 정보 공유 및 사업 협력기반을 마련하고자 각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된 조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동 협의체 간 정보공유·사업연계, 협력기반 마련 - 동 협의체 간 협력 및 대표·실무협의체 연계기구

○ 또한, 동 협의체 및 연합회의 회의 개최 근거를 안 제14조(회의 등)에 반영함으로써, 현행 조례 제19조(회의 수당) 본문에서 규정한 “회의”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회의수당 지급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임.

영등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9조

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3) 8개: 중장년·어르신분과, 아동·청소년분과, 장애인분과, 다문화분과, 교육·문화분과, 보건·의료분과, 자립지원분과, 주거지원분과

- 한편, 서울시 자치구 중 동 협의체에 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명시한 곳은 4) 10개구로 파악됨.

□ 주요 내용으로

- 안 제1조(목적)는 조례의 적용 범위를 “영등포구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, 실무분과, 동 협의체”에서 “영등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”로 정비하여 문장을 간결화하였으며, 조직이 신설·개정될 때마다 조문을 개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입법 경제성을 높임.
- 안 제2조(정의)제5호는 및 안 제3조(협의체 기구)는 현재 실질적으로 구성·운영하고 있는 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합회”의 정의를 신설하고, 협의체 기구로 명시함.
- 안 제8조(동 협의체)제5항은 안 제8조의2(연합회) 조문을 신설함에 따라, 해당 조문을 인용하여 조례 해석의 명확성을 높임.
- 안 제8조의2(연합회)는 연합회의 설치 근거, 기능 및 구성을 명시함으로써 조직 운영의 제도화 및 체계성을 높임.
- 한편, 연합회 구성 방식 및 선임 절차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“부패영향평가”의 개선의견을 반영함

부서 안	수정안
③ 연합회 위원은 각 동 협의체 <u>위촉직 위원장으로</u> 구성하며, 연합회의 임원은 회장 1명, 부회장 2명, 감사 1명으로 <u>호선 선출하고</u> , 사무국장 1명은 회장이 지명하여 구성한다.	③ 연합회 위원은 각 동 협의체 <u>선임 위원장</u> 으로 구성하며, 연합회의 임원은 회장 1명, 부회장 2명, 감사 1명으로 <u>호선하고</u> , 사무국장 1명은 회장이 <u>추천하여 선임한다.</u>

4) 중랑구, 성북구, 강북구, 도봉구, 서대문구, 마포구, 양천구, 구로구, 관악구, 강남구

- 안 제12조(위원의 위촉 해제)는 인권영향평가 의견을 반영하여 조문을 개정함.

해당조항	평가내용
<p>제12조(위원의 위촉 해제)</p> <p>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. 위원이 사망하거나,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“질병”을 위촉 해제 사유로 삼는 것은 인권 침해 요소가 있음 ▶ “사망”을 위촉 해제 사유로 삼는 것은 인권 친화적이지 않으며, “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”를 수동적인 관계를 암시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안으로 “1. 장기간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. “위원 스스로 사임 의사를 표시한 때”를 제시함

- 안 제14조(회의 등)는 동 협의체 및 연합회의 회의를 각각 연 6회, 연 3회 이상 개최하도록 명시함.

- 동 협의체는 법 제41조제7조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는 “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”고 명시하고 있어, 법령상 동 협의체의 회의 개최가 전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. 이에 실질적으로도 정기회의가 개최되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됨.
- 한편, 연합회의 경우 법률상 설치 근거는 없으나, 협의체 간 정보 공유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운영기구로서 회의를 개최해 온 점을 고려할 때, 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본 조례에 그 운영 및 회의 근거를 명시한 것은 조례의 체계와 목적에 부합하며,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.

□ 검토결과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도적 근거가 없던 연합회의 기능과 구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연합회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며,
- 또한, 동 협의체 및 연합회의 정기회의 개최 횟수를 명시하여 회의를 공식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운영 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됨.

참고 자료

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·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

제41조(지역사회보장협의체)

①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,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 · 법인 · 단체 · 시설과 연계 ·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 · 군 · 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.

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 · 자문한다.

1. 시 · 군 · 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·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
2. 시 · 군 · 구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
3. 시 · 군 · 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
4. 시 · 군 · 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
5. 읍 · 면 ·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 다만, 제40조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. <개정 2017.3.21>

1.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2.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· 법인 · 단체 · 시설의 대표자
3. 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
4. 제7항에 따른 읍 · 면 ·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(공동위원장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된 공동위원장을 말한다)
5.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

④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둈다.

⑤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.

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·군·구의 조례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로 정한다. <개정 2017.3.21>

⑦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읍·면·동 단위로 읍·면·동의 사회보장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해당 읍·면·동에 읍·면·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. <신설 2017.3.21>

⑧ 제7항에 따른 읍·면·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자치시 및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한다. <신설 2017.3.21>

2

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제5조(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)

-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(이하 "지역사회보장협의체"라 한다)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(호선)하되,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.
-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.
- ④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.
- 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·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. 다만,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⑦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심의·자문을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으며, 전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

항은 시·군·구의 조례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로 정한다. <개정 2017.9.21>

제6조(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두는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)

-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실무협의체(이하 "실무협의체"라 한다)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,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 이 경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 - 1.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·법인·단체·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
 - 2.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
 - 3. 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
 - 4. 그 밖에 학계 등 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
-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.
- ④ 실무협의체 회의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
-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기관·법인·단체·시설 간 연계·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무분과를 구성·운영할 수 있으며, 실무분과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제7조(읍·면·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)

- ① 법 제41조제7항에 따른 읍·면·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(이하 "읍·면·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"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. <개정 2017.9.21>
 - 1.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·아동·노인·장애인·한부모가족·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발굴 업무
 - 2.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
 - 3.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

4.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

② 읍·면·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읍장·면장·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장·면장·동장의 추천을 받아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 <개정 2017.9.21>

1.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·법인·단체·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

2.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

3. 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

4. 삭제 <2017.9.21>

5. 「지방자치법」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

6. 주민자치위원, 자원봉사단체 구성원

7.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

③ 읍·면·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읍·면·동별로 각 10명 이상으로 한다.

④ 읍·면·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, 읍장·면장·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.

⑤ 읍·면·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.

⑥ 읍·면·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6항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